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| 비과세 연구보조비 | 문서번호 | 3-2-17 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제정일  | 2010. 03. 01.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개정일  | 2012. 11. 01.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페이지  | 1/1           | 관리<br>부서 | 사무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과세 연구보조비(이하 “연구보조비”라 한다)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원) 연구보조비의 재원은 학교비 예산에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『교원인사 업적심사 규정』이 정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지급금액) 연구보조비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급기준과 방법) 연구보조비의 지급 시기는 매월 보수지급일로 한다.

제6조(비과세 기준)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